

인문사회연구원 규정

제정 2005. 7. 21
제1차 개정 2006. 12. 4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연구원은 상지대학교 부설 인문사회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(조 개정 2006.12.4)

제2조(목적) 본 연구원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조사연구 및 이론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및 실천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재) 본 연구원은 상지대학교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 본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제문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
2. 각종 자료의 수집·정리·간행 및 논문집·단행본의 발간
3. 공개강연, 연구발표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
4. 타 연구기관 및 관련 학회와의 연구교류
5. 외부 위탁연구의 수행
6. 기타 연구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

(조 개정 2006.12.4)

제2장 조직

(개정 2006.12.4)

제5조 삭제 (2006.12.4)

제6조 삭제 (2006.12.4)

제7조(연구원장) ① 연구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.
② 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연구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(개정 2006.12.4)
(조 개정 2006.12.4)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본 연구원에는 연구원의 임면, 연구업무,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(신설 2006.12.4)

② 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06.12.4)

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(개정 2006.12.4)
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는 연구원장을 포함하여 7~9명으로 하며, 동일학과 교수가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06.12.4)
⑤ 운영위원회에는 인문과학분과, 사회과학분과, 법학분과위원회를 둔다. (개정 2006.12.4)
(조 개정 2006.12.4)

제9조(간사) 본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를 두되, 연구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별도의 사무직원을 임면할 수 있다.
(조 개정 2006.12.4)

제10조(연구원 등) 연구원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은 연구교수 ·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.

- ② 삭제 (2006.12.4)
- ③ 삭제 (2006.12.4)
- ④ 삭제 (2006.12.4)

(조 개정 2006.12.4)

제11조(고문) 본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12조(자문위원)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, 타교 교원 또는 본 연구소 직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13조(연구보조원) 연구원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, 연구원장이 임면한다.

(조 개정 2006.12.4)

제14조 삭제 (2006.12.4)

제3장 회의

제15조(회의) ① 삭제 (2006.12.4)

- ② 연구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정리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- ④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의 개정과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
(조 개정 2006.12.4)

제16조 삭제 (2006.12.4)

제4장 재정

(개정 2006.12.4)

제17조(재정) 본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교외 연구비와 수탁 연구비
2. 교내 연구비
3. 정부·대학의 보조금 및 기타 기부금
4. 기타 수입

제18조(회계년도 및 예산 결산) ①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.

②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칙

(신설 2006.12.4)

제19조(규정 개정 및 해산) ① 본 연구원의 규정 개정 및 해산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(개정 2006.12.4)

② 연구원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재산은 상지대학교에 귀속된다.

제20조(준용)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교수·연구원임용규정 및 부설 연구소(원)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.

(조 신설 2006.12.4)

제21조(지침 등) 연구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(조 신설 2006. 12. 4)

부칙 (기획예산과-753, 2005.7.21)

- ①(시행일) 본 규정은 200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인문과학연구소 규정, 사회과학연구소 규정, 법학연구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143, 2006.12.4)

이 규정은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